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37
- 발의자 : 서울특별시장
- 발의일 : 2022년 10월 17일
- 회부일 : 2022년 10월 21일

### 2. 제안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3조의2).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2.9.8. ~ 9.28.)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u>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 ----- ----- -----.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318억 9천 7백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1연도말 조성액(A)	'22년도 증감액			'22년도 10월말 조성액 및 관리현황 A + B		
	계(B)	수입액 (C)	지출액 (D)	계	재투기금 예탁	시금고 예치
31,698	199	1,088	889	31,897	-	31,897

- 지난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의 장기화 및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교류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23년에 활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 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초과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2017년 12월 남북교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활발한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으로 제시한 서울시와 북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증진 기반조성과 관련사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면 남북관계나 북측과의 협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자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반면,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막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 인도적인 지원 필요성 등과 같은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을 높이고,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비추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측면도 있음.
- 결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여부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경우에도 기금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여부 및 기한의 연장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금의 존속이 결정될 경우에도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와 자금운용 합리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

## 【참고자료】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